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2021. 03. 19.
개정 2022. 02. 08.
개정 2023. 02. 09.
개정 2026. 03. 27.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주)한샘(이하 '회사' 라고 한다)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기본자세 및 역할)

-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이하 '감사위원' 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세로 직무에 임해야 한다.
 1.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실의 인정, 그에 관한 판단 및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경영실적의 추이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사 및 집행임원과의 의견교환을 원활히 하며 관련부서 임직원으로부터도 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감사환경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이론의 연구와 감사기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부정, 오류, 비능률, 낭비, 제도의 부적절성과 이해 갈등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4 조(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5 조(직무와 권한)

-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집행임원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집행임원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이사 및 집행임원의 보고 수령
 6. 이사 및 집행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7. 이사 및 집행임원과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8.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자, 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 한 대우 여부 확인
 9.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0.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1. 외부감사인의 선정
- ③ 감사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 부서장,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중요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
 2. 정물일치 확인을 위한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및 위법사항 확인 및 조사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 ④ 감사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6 조(의무)

-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은 부정행위를 확인하거나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경영진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 7 조(구성)

-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로 한다. 또한,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한다.
- ③ 감사위원회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이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8 조(자격상실)

- ① 주주총회가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면 해당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② 상법 542 조의 11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 9 조(감사위원 보선)

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정관 제 48 조 제 2 항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조(위원장)

-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로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 유고시에 감사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정할 수 있다. 만일 이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독립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감사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회의소집)

감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12 조(소집권자)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감사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3 조(소집절차)

- ① 감사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 일 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4 조(결의방법)

- ①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내부감사부서

제 15 조(내부감사부서 구성원)

- ①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거나, 회사의 부서를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서 정한 부서의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은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감사계획과 절차 및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고,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 ④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 ⑤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 유고 시에 신임 내부감사부서 책임자를 선정하기 전까지 내부감사부서 감사 조직의 차상위 직책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⑥ 회사는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이 감사위원회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16 조(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자격)

- ①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과 전문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1. 회사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 이사 및 집행임원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자
 - 3. 임시직 또는 조건부 임용자

4. 그 밖에 감사위원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제 17 조(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인사 및 대우)

- ①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평가 우대기준을 마련, 운영할 수 있다.
- ②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선임, 해임, 보직변경 시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게 사전 협의를 구한다.
- ④ 회사는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와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이 직무전환 되어 타 부서로 이동 시 감사활동 등을 이유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마련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에 외부전문인력을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으로 채용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 18 조(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행동규범)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임의로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사실과 증거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실시

제 19 조(감사통보)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전에 피감사 부서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유지 등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 20 조(감사실시 계획)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감사부서 및 업무에 대하여 사전 파악하고 관련문서, 자료 등을 검토, 분석 한다.

제 21 조(감사방법)

- ① 감사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집행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확인서, 진술서, 경위서 등 피 감사자 이외의 자가 작성한 문서를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가 자필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감사를 하지 않고 대상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22 조(감사불응시의 조치)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부서의 임원 또는 그 소속 직원이 감사업무 및 조치사항에 불응 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3 조(보고 및 조치)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최고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법령, 회사의 규정, 지침, 지시 등을 위반한 사항
 2.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 사실 적발 사항
 3. 업무상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 ② 감사위원회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 종료 후 다음 각목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책임자
 3. 현황 및 문제점
 4. 필요한 조치사항

제 24 조(감사 결과의 통보)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종료 후 피 감사부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 및 그 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② 피 감사부서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조치계획 및 결과를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내부회계관리제도)

- ① 감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 주주총회 개최 1 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 년간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목이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임을 기술
 2. 수신인이 주주 및 이사회임을 기술
 3. 평가기준일에 평가대상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4.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와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책임은 대표집행임원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책임이 있다는 사실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추가적인 검토절차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실
 6.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평가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10.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론
 11.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12.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미 수행중인 절차
 13. 보고서 일자
 14. 감사위원의 서명 날인
 15. 기타
 - 가. 대표집행임원의 보고내용 요약(평가 결론, 유의한 미비점, 시정조치 및 향후 계획 등)
 - 나. 평가 결과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항
 - 다. 권고사항

제 26 조(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감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 요청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

1.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시스템 작동여부
2. 영업계획, 전략수립 과정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여부
3. 회계정책 또는 추정변경의 타당성, 회계처리방법 등의 적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여부
4.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5. 부서별 업무성과 분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6. 내부통제관련 임직원 교육계획의 적정성 여부
7.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8. 조직 구조상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

제 5 장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등

제 27 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 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의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요청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집행임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외부감사인 선정 등)

- 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3. 전기 외부감사인과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 나. 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역
 - 다.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제 2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제 29 조(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 30 조(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단, 제 15 조 ④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26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명칭 관련 개정사항 및 제 7 조 제 4 항의 개정내용은 2026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